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피명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상향〉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 등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하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과 설정된 위험구역으로부터의 퇴거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제2항제3호·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2조(과태료) ①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② ----- ----- -----.

[현행법에 따른 대피명령 체계]

근 거	발령 주체	발령 요건	내 용
제4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령
제41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어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46조제1항	시·도지사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피(퇴거)명령을 실시

대피명령 제도는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서, 해당 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2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청장 등이 발령하는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의 대상으로 하여금 해당 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과태료 수준의 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사례의 경우 과태료 수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대피명령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둘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대피명령 등 위반을 사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 대피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사례³⁾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

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할 과태료 수준을 상향할지 여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의 필요성, 대피명령 등의 위반 실태 및 이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대피명령 등이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행정명령임을 고려할 때, 현재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 및 집행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3) 머니투데이(2025.11.24.), “안철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100만원 ↑”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이재민을 격려했다. 당시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주민들이 수해 상황에서도 대피하지 않고 집을 지키려고 한다’ ‘대피명령의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음.

KBS(2024.08.21.), “태풍 북상 대피 명령에 스노클링하던 20대 구조”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져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음.